

# 審 查 報 告 書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8. 3. 31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8. 3. 31
- 라. 上程日字 : 1998. 4. 10

## 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稅務課長 安光來)

### 가. 提案理由

- 상위법 제정(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)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관련상위법(시행규칙, 도조례)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현행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불필요 하게 등재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 개정코자 함.

### 나. 主要骨子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정해진 정보공개 수수료를 조례로 명문화(안 별표2)
-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조문을 개정(안 제3조, 제7조)하고,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 삭제(안 별표2).

- 상위관련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된 병적증명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수료를 삭제(안 별표1의 <증명>란 2 및 6중 ⑬항)
-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요율표의 중복 부분을 삭제 (안 별표1의 <증명>란의 1, 인감에 관한 증명증 ②항과 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>란 1의 ③항과 중복)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◎ 본 개정 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 제128조(수수료)와 같은법 제130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써,
- ◎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명문화하고 관련 개별상위법 규정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와 중복 등재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無

5. 討 論 : 無

6. 少數意見 : 無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186호
의결년월일	1998. . . (제 회)

##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3.31.

#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3. 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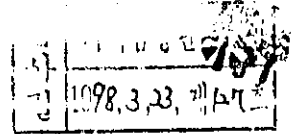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(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)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관련상위법(시행규칙, 시도조례)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현행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불필요하게 등재되어 있어 이부분을 삭제, 개정코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정해진 정보공개 수수료료를 조례로 명문화(안 별표2)
- 나. 시·도조례로 징하도록 규정된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 관련 조문 개정(안 제3조, 제7조),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율표 삭제(별표2)
- 다. 상위관련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도록 규정된 병적증명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수수료를 삭제(안 별표1의<증명>란 2 및 6중㉓항)



##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2”를 “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[별표1]중 구분의 “<증명>란 2.” · “6.사실에 관한 실적증명의 ⑬” 및 “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>란 1.일반행정관계의 ③” 을 각각 삭제한다.

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정보공개수수료

공개대상	공개 방법 및 수수료			
	원본의 인람·시청	원본의 사본(출력물) 복제물·인화물	진산자료의 인람·시청	진산자료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
문서·대장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건(10매기준)1회:200원</li> <li>· 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1매 기준)</li> <li>- A3이상 30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100원</li> <li>- B4이하 25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5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건(10매 기준)</li> <li>1회 : 200원</li> <li>·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중이출력물)</li> <li>- 1매마다</li> <li>· A3이상 300원</li> <li>· B4이하 250원</li> <li>○ 복제</li> <li>- 1건(10매기준)1회:250원</li> <li>- 10매초과시5매마다100원</li> <li>※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
도면·카드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매 : 20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1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1매 기준)</li> <li>- A3이상 30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100원</li> <li>- B4이하 25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5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매 : 200원</li> <li>· 1매초과마다 1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중이출력물)</li> <li>- 1매마다 · A3이상300원</li> <li>· B4이하250원</li> <li>○ 복제</li> <li>- 1건(10매기준)1회:250원</li> <li>- 10매초과시5매마다1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
녹음테이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</li> <li>- 1건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</li> <li>· 1개(60분기준)마다1,500원</li> <li>-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건(30분기준)마다 7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제</li> <li>-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개마다 5,000원</li> <li>-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편마다 3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		
녹화테이프(비디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</li> <li>-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</li> <li>· 1롤(60분기준)마다 1,500원</li> <li>-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편(30분기준)마다 7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제</li> <li>- 1편이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롤마다 5,000원</li> <li>-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편마다 3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</li> <li>- 1편 : 1,500원</li> <li>·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제</li> <li>- 10분마다 3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
영화필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</li> <li>- 1편이1켄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켄(60분기준)마다 3,500원</li> <li>- 여러편이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</li> </ul>			
슬라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</li> <li>- 1컷마다 2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제</li> <li>- 1컷마다 3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청</li> <li>- 1컷마다 200원</li> </ul>	
마이크로 필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건(10컷 기준)1회 : 500원</li> <li>·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출력물 : 1매기준)</li> <li>- A3이상 30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200원</li> <li>- B4이하 250원</li> <li>· 1매초과마다 150원</li> <li>○ 복제</li> <li>· 1롤마다 1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		
사진·사진필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매 : 20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 5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화(필름)</li> <li>- 1컷 : 50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</li> <li>3" × 5" 200원</li> <li>5" × 7" 300원</li> <li>8" × 10" 400원</li> <li>○ 복제(필름)</li> <li>- 1컷마다 6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람</li> <li>- 1컷 : 200원</li> <li>· 1매초과마다 5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본(중이출력물)</li> <li>- 1컷 : 250원</li> <li>· 1매 초과마다</li> <li>3" × 5" 50원</li> <li>5" × 7" 100원</li> <li>8" × 10" 150원</li> <li>○ 복제</li> <li>- 10부마다 5,000원</li> <li>※ 매체비용은 별도</li> </ul>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요율)①수수료를 징수할 제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<u>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수수료의 감면등)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요율)①----- ----- <u>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 -----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수수료의 감면등)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 (삭제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【별표1】 제증명수수료요일표				【별표1】 제증명수수료요일표			
구 분	기준	요금	비고	구 분	기준	요금	비고
2. <u>빙직에 관한 증명</u> ① <u>빙직증명</u>	1통	300원		(삭제)			
6. <u>사실및실적에 관한 증명</u> ①~⑫(생략)  ⑬ <u>건축물관리 대장등본</u> 1매추가	1통	400원  100원		6. ----- ----- ①~⑫(현행과 같음) (삭 제)			
<인가,허가,신고,등록, 지정, 확인등>				<인가,허가,신고,등록, 지정, 확인등>			
1. <u>일반행정관계</u> ① ~ ②(생략)		(생략)		1. ----- ①~②(현행과 같음)			
③ <u>인감의(개인) 신고</u>	1건	200원		(삭 제)			

라.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요율표의 중복부분을 삭제  
(안 별표 1의<증명>란의 1, 인감에 관한 증명증②항과 <인가,  
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>란1의③항과 중복)

## □ 참고사항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(비용부담) ①법  
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 
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(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  
물·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)으로 구분  
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 
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.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(수수료의 금액)  
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  
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7조(수수료)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  
서·신고서 또는 안전도검사서에 각각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 
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○ 병역면시행령제167조(수수료) ①이 영에 의하여 병역증·진역증의 재교부 또는 병적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,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○ 병역면시행규칙제118조(수수료) 영 제 1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병역증 또는 진역증의 재교부 : 500원
2. 병적증명서의 교부 : 200원

○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(수수료)

① 제1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일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등본의 발급 : 500원
2. 초본의 발급 : 400원
3. 일람 : 200원
4. 건축물현황도면의 발급 : 600원(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)